

應旨農書로 엮은 梁翊濟 農書의 研究

18世紀末 全南 寶城地方의 農村問題

金 榮 鎮*

- I. 梁翊濟 農書의 著述動機와 背景
- II. 梁翊濟 農書의 內容
- III. 梁翊濟의 農書 편찬태도
- IV. 梁翊濟의 農政觀과 農業立地論
- V. 梁翊濟의 農業技術論
- VI. 다른 應旨農書와의 比較
- VII. 全南 寶城地方의 農村問題

I. 梁翊濟 農書의 著述動機와 背景

이 農書는 全南 寶城의 儒生인 梁翊濟가 1799年(己未)에 저술한 18쪽 3,600字 내외의 간략한 筆寫本이다. 表題는 家農書合單이라 되어 있으나 단일 農書 이외에 다른 내용이 合單된 것은 없고 內題는 全羅道 寶城郡 幼學 臣 梁翊濟 農書라 되어 있다. 表題의 書體가 本文의 書體와 다르고 庚戌年이라고 연도를 밝힌 것으로 보아 후일에 누군가 表紙를 만들면서 임의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農書를 연구하는 까닭은 18세기 말엽 남

해안 지방의 地域 農業問題를 밝히면서 같은 시기 같은 동기로 저술된 다른 농서와 비교함으로써 이 農書의 가치를 규명코자 함이다.¹

저자인 梁翊濟는 1726年生으로 이 農書를 엮을 때 74歲의 老齡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 스스로 자신을 幼學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시골의 겸손한 實學儒生이었던 것 같다.

그가 末年에 이 농서를 엮게 된 동기는 때마침 正祖가 전국민에게 農書를 구하는 紿音을 발표하였기 때문이었다.

綴音이란 임금의 말씀을 존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그 어원은 禮記의 王言如絲其出如綴에서 유래된 것이며, 일명 緿言이라고도 한다. 正祖가 1798年 11月 30日 윤음을 발표하게 된 동기는 다음해인 己未年(1799)이 自己 祖父이자 先王인 英祖께서 稽田에 나가 親耕儀式을 거행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正祖는 이를 기념하여 국내의 농업진흥을 대대적으로 퍼하고자 윤음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正祖의 이 紿音을 농사를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紿音

*農漁村振興公社 社長, 農學博士.

¹ 이와 같은 연구는 이 농서를 어렵게 구해 준 古書研究會 양양모 회원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勸農政求農書綸音)이라 하거니와, 정조는 누구든지 農政이나 農法改良에 좋은 방책이 있거든 異俗이나 古方에 관계없이 章疏나 簿冊으로 作成해 올리라고 하였다(階庭萬里人人各進良策…母泥乎異俗 母拘乎古方… 或以章疏 或以 簿冊). 그와 같은 좋은 방책들을 모아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農家의 大全을 삼고자 했이었다(我則受之 折衷而用之 可謂農家の大全). 곧 百家의 의견을 들어 최신의 새로운 國定農書를 작성코자 함이었다. 이는 世宗이 國定農書인 農事直說을 엮을 때 三南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각 고을의 경험 많은 늙은 농부들의 의견을 들어 농서를 엮게 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梁翊濟도 이 綸音에 따라 농서를 지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서두에서 “先王께서 籍田하신 回甲의 해를 맞아 간절하신 聖教가 백성에게 미치니 신하된 자 어찌 감히 미련하게 한 마디 말이 없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先王籍田回甲之歲而… 聖教切至之下 臣安敢泥默而無一言乎)라고 밝히고 있다. [1][2]

이렇게 작성된 농서는 국왕의 뜻(王旨)에 따라 저술된 것이므로 이를 應旨農書라 하거니와 응지농서에는 작성하고도 王께 陳疏하지 않은 것과 진소한 것이 있으며, 진소는 하였으되 政府에서 逐條 검토한 것과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또 내용도 체계적 농서체로 된 것과 견의문 형식의 간단한 陳疏體로 된 것이 있는데 陳疏體의 것은 대부분 농업 기술적인 것보다는 농업정책에 관한 것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梁翊濟 農書는 아마도 陳疏하지 않은 진소체의 농서로 믿어 진다. 그 까닭은 正祖實錄에

나타난 27人の 陳疏者나 42名의 陳農書者에도 들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 농서의 表題에 家農書合單이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농서는 應旨農書로 저술되기는 하였으나 家藏本으로 秘傳되어 온 것으로 믿어진다.

II. 梁翊濟 農書의 内容

이 農書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두에 농학 원론적 풀이에 이어 적기영농의 필요성이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直江工事와 넉넉한 流幅의 필요성, 제방冒耕의 폐단, 가뭄 때의 越畠通水와 마르고 쳐박한 땅이나 수령畠의 改良 등을 勸勉과 勞力動員 등에 결부시켜 農事에 가장 重要한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적지적 작을 뜻하는 土宜에서 山高水冷處에는 올벼(早稻)의 小株密植, 찬물이 피는 논에 紅稻, 乾濕이 반복되는 논에 水山稻, 밭 같으면서 밭이 아닌 논에 粘山稻, 진흙 땅에는 老人稻, 바람의 피해가 있는 해변에는 역시 早稻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벼를 밀파하여 잡초를 억제하고자 하느니 겨울이 오기 전에 淀를 쌓아 논에 겨우내 물을 흘러 내리게 함이 토양도 윤택하고 가뭄도 덜 타며 경운의 노력도 십히 줄일 수 있다.

셋째로, 뽕나무 재배는 오디가 익을 무렵 부드러운 땅을 갈고 오디씨를 재에 버무려 파종하면 가을이 오기 전에 1尺 길이로 자라게 된다. 이듬해 봄에 定植을 하면 길이 1尺半에서 2尺 길이로 자라게 되는데 3년째에 主幹을

잘라 주면 곁에서 나오는 가지가 主幹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이 곁가지의 끝을 잘라 주면 사방으로 가지가 실버들(細柳)같이 뻗고 그 잎은 손바닥 만하게 넓어진다.

넷째로, 木花 재배는 반드시 양지바르고 과습하지 않은 땅에 드물게 파종하고 두어 번 김을 때 주면 수량이 배나 많게 된다. 논이 많은 지방에서는 木花 재배에 힘쓰지 않는고로 木花 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화를 심기에 마땅하지 않은 그늘 밭이나 과습한 땅은 피해야 하며 거름을 많이 주는 것은 김매기를 많이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거름을 많이 주면 웃자라고 일만 크게 되나 김매기를 자주하면 일은 작아도 꽃이 많이 피게 된다. 참깨를 混作 하면 木花 수량이 많아지니 早生種 참깨를 혼작함이 좋다.

다섯째로, 보리는 紅牟種과 早麥種이 있는데 紅牟種은 건조한 곳, 早麥種은 습한 곳에 알맞다. 早麥種은 키가 크고 紅牟種은 찰기가 많다. 드물게 파종하고 재를 많이 사용할 것이며, 싹이 나기 직전에 거름을 주는 것은 심히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로, 모밀은 맛이 좋고 성상이 온화하며 먹으면 능히 열을 가시게 하는 救荒作物이다. 메마른 언덕에 알맞으며, 기장과 순무를 간작하여도 세 가지 작물이 모두 잘 자라게 된다.

일곱째로, 대마(大麻)는 가로로 이랑을 짓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 파종한다. 혹은 10月(陰曆)에 미리 파종하고 그 위를 피복하여 두면 봄에 일찍 발아하여 일찍 수확할 수 있다. 봄갈이는 늦게 자라나 파종법은 같다는 게 늙은 농부들의 말이다.

여덟째로, 栽培法은 千里마다 다르고 바람

은 百里마다 다르므로 지역에 따라 농법이 다른 것은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서북 지방이 동남보다 이로운 바, 寒暖의 선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서북 지방의 재배법을 동남 지방에 적용할 수 없고, 동남 지방의 농법도 서북 지방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아홉째로, 賚城地方을 論하건대 보성군은 반도의 남쪽 끝으로 14개 面 중 4개 面은 바다에 임해 있고 10개 面은 山間에 위치해 있다. 산간에는 울창한 山草가 많아 퇴비 자원이 많지만 海邊地方은 야초가 많지 않아 많은 퇴비를 채취할 수 없다. 그 위에 人功이 고르지 않아 地力도 자연 고르지 않게 된다. 산간이나 해변을 막론하고 가뭄이 심하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된다. 또 해안 지방은 벌레와 바람이 많아 山間이 豊作이 들어도 해변은 困年이 들게 된다. 산간에 재해가 없어도 해안은 재해가 드는데, 대체로 그 원인은 한발 때문이다.

따라서 가뭄에 대비하는 길은 제방을 쌓아 물의 功德을 입는 것이다. 옛날에 安定胡先生이 호남에서 학문을 일으킬 때 학도들에게 항상 水利를 강구토록 말하였다. 물 스스로가 이로운게 아니라 이로웁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나니 항상 堤防을 쌓아 대비한다면 어찌 한발을 근심하리오? 물은 낮고 논이 높을 때 水車를 쓰면 높은 곳의 논을 윤택하게 하고 乾燥한 곳을 濕하게 하며, 말라가는 苗에 養分을 주는 데도 우리 나라는 水車 이용에 대해서 아직도 밝지 않다. 정하읍건대 勸農官으로 하여금 가뭄때 물을 고루 멀 수 있도록 하고, 제방의 관리를 위해 제방을 주관하는 관원을 둠은 곧 課農之一政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치스런 풍속에 비추어 청하읍전

대 50이 되지 않은 자는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벼슬에 있지 않은 자는 모시옷을 금하며, 常 사람은 겹은 갓과 도포 및 唐鞋를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하읍건대 황무지를 개간한 자에게는 5年 동안 課稅를 면하여 농사를 권하고 벌레, 바람, 旱魃 등 三災가 빈번한 해 안 지방은 結稅나 雜役을 감하여 주어야 한다. 빈부에 따라 형편에 맞도록 出役을 고르게 하며, 商業을 억제하고, 農業을 중히 여기어 遊衣遊食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한다.

木花 農事는 3年 또는 5年에 한 번 좋은 수량을 얻을 수 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는 해에도 白地에 課稅함으로 백성은 空手로 다만 물 뿐인즉 청진대 木花 農事에는 판대하게 함이 좋을 것 같다.

農事의 理致를 알고 중망이 있는 한 사람을 가리어 都勸農을 삼고, 각 面·里에도 같은 業務를 담당하는 執公을 두어 隨時 農務를 보도록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III. 梁湖濟의 農書 편찬태도

앞서 저자의 農書를 개관하였거니와 그의 편찬태도를 먼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그는 自己 體驗이나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 농서를 엮었다. 간략한 陳疏體農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결을 요하기는 하지만 일반 기술농서에서 보듯 기존의 農書나 學者의 설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本文 중 安定胡라는 학자를 거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의 농학지식이나 기술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水利觀을 관념적으로 인용, 강조한 것 뿐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그는 스스로 농업에 대한 식견은 타월하나 기존의 農事直說(1429), 農家集成(1655), 山林經濟(1700)등 체계적인 농서를 전혀 읽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둘째로, 이 농서는 전남 보성 지방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自己 體驗 위주의 내용을 서술한 것과 상관 관계가 있으나, 우리 농서의 地域性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衿陽雜錄(1482) 등 일부를 제외한 기존 농서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부분 地域性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존하고 있는 應旨農書들마저 대부분 政府의 검토과정에서 陳疏者가 말하는 精隨만을 초록한 것이라 地域性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히 본서의 내용은 寶城 지방의 지역농업에 국한시켰고, 그것도 산간부와 해안부로 나누어 農業立地를 다루고 있어 지역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應旨農書로 작성은 하였으되 陳疏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산만한 감은 있어도 이것이 도리어 18세기말의 지역농업을 이해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이 농서는 저자 자신이 느낀 기술적改善策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따라서 體系的이라기보다는 매우 단편적이고 疏漏한 감을 금할 수 없다. 예컨대 농업생산의 과정은 파종, 시비, 중경, 제초, 물관리, 수확 등 다종 다양한 기술이 일련적으로 연결되나 본서는 개선을 요하는 어느 과정의 한 대목만을 기술하거나 극히 초보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저자가 해당초 體系的 農書를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나,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서를 기대하는 동학들에게는 이

점이 크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 본서의 내용을 검토코자 한다. 검토의 방법은 서술의 순서라기보다는 내용을 통털어 農政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과 뒤에 散在해 있어도 이를 한묶으로 묶어 저자의 農政觀·農業立地, 農業技術로 양분해 검토하기로 한다.

IV. 梁羽濟의 農政觀과 農業立地論

보성군은 우리 나라 남단의 전남 해안지방에 위치하며, 보성이란 郡名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757년부터라고 한다. 일시 具州 또는 山陽이라는 郡名이 쓰여졌으나, 그것은 단기간이었다. 郡은 면적이나 生產, 그리고 人口면에서 縣보다 그 규모가 크다. 작은 縿에 從六品職의 縣監을 두고, 이보다 좀 큰 縍에 從五品職의 縣今을 둔데 반하여, 郡에는 이보다 品階가 높은 從四品職을 두었는데, 보성군은 이에 해당하는 군이다. 저자는 보성군은 해안에 4개 면, 내륙부에 10개 면 등 도합 14개 면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面은 오늘날과 같이 行政的 구실을 다하는 단위 기관은 아니었다. 18세기 말의 面은 郡縣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정 면적마다 勸農官을 배치하고 단순히 官命을 전달하는 반자치적 지역 단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官命下達式의 구실에 불과한 이 勸農官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권농관 설치는 이미 조선조 태조 때 이래 각 고을에 설치된 기관으로 저자의 독창적 의견은 아니나 저자는 말미에서 農事의 理致를 알고 중망이 있는 지도자를 郡에 '都勸農' 즉, 으뜸가는 勸農官으로 삼고 각 面 뿐

아니라 里마다 같은 기능의 執公을 두어 수시로 農務를 보도록 한다면 크게 増產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늘날의 계통적 農村指導機能을 그는 190년 전에 강조한 것으로 종래의 형식적 기능을 郡·面·里까지 두어 실질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농가마다 천차만별의 경종기술을 우수한 선진기술로 대체, 확산시키는 데 指導機能의 강화가 우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勸農官의 選任 기준으로 衆望을 들고 있는데 權力이 없는 勸農官이나 執公은 농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곧 指導力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農業用水확보와 均配를 위해 木利 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의 農政觀은 指導者를 통한 技術普及와 증산의 任務라고 본 것이다. [5]

그는 이와 같은 勸農官 설치 못지 않게 증산의욕을 저상시키는 그릇된 稅政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목화 농사는 3~5년에 한번 풍작이 드는데 凶年인 해에도 課稅하거나 심지어 수확이 전혀 없는 白地에도 課稅하는 특정을 고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增產을 위해 荒蕪地를 개간한 자에게는 5년 동안 과세를 면하여 경지확대를 기하고, 三災가 빈번한 해안지방은 稅金이나 雜役을 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농정관은 指導者를 통한 기술보급으로 적극적 증산을 꾀하면서 稅政의合理화를 통해 증산의욕의 沮傷을 막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寳城地方에 대한 그의 農業立地論을 살피고자 한다. 보성군은 남해안에 위치한 좋은 농업적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다. 제반 농사에 알맞는 강수량과 평균기온, 그리고 긴 無霜期間과 충분한 日照時間 등으로 옛부터 쌀, 콩, 목화, 고구마 등의 夏作物과 보리 등

의 冬作物을 생산해 왔으며, 특용작물로 茶가 생산되고, 宣祖때 이후의 진상품인 龍紋席이 특산품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6]

이와 같이 보성군은 전체적으로 좋은 농업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저자는 농업 입지면에서 보성군을 해안부와 내륙부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논하고 있다.

저자의 안목으로 내륙부가 해안부보다 유리한 점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地力增進 수단의 하나인 緑肥 자원 때문이다. 내륙 산간부는 풍부한 山草, 즉 이를 봄에 잎이 피는 木本類의 가을잎 등 모내기 전의 緑肥 자원이 많지만, 해안부는 이와 같은 자원이 적고, 있어도 봄철 생장이 늦은 野草가 대부분이라 모내기 전 本畜의 緑肥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自生 野草는 잔디류와 같이 봄 철 생육이 더디고 한 여름 高温下에서 생육이 무성한 南方型이 대부분이다. 보성의 해안 지방에도 봄철 수량이 적은 이 南方型 野草가 우점되었던 것 같다. 현재와 같이 손쉬운 化學肥料가 없던 당시로서는 퇴비 이외에 봄철의 山野草에 의한 緑肥資源의 유무가 농업 입지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다.

둘째로, 해안부는 바람이 많아 作物 특히 水稻作에 피해가 큰데 반하여 내륙부는 산에 가리어 이의 피해가 해안부보다 적다는 것이다. 당시의 벼 品種들은 長稈穗重型 품종들이 많아 현재의 短稈穗數型 품종들에 비해 바람에 의한 倒伏의 피해가 현재보다 더욱 커울 것이다.

셋째로, 저자는 해안부는 벌레의 피해가 크다고 하였는데, 二化螟蟲과 벼멸구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부에 특히 심한 것은 멸구류인데 그것은 중국에서 매년 기류를 타고 幼

蟲이 날아오기 때문이며, 산간 내륙부보다 해안부에 우선적으로 기착, 번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넷째로, 가뭄의 피해도 해안부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한 가뭄이 들면 산간이나 해안부나 모두 흉년이 들지만, 산간에 재해가 없는 해에도 해안부에 재해가 드는 것은 대체로 한발 때문이라 하였다. 더운 바람이 한랭한 山에 부딪쳐야 비가 된다는 상식에 비추어 산이 없는 해안부가 산간부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산간 내륙부는 골짜기마다 大小 하천이 있고, 여기에 溝를 막아 관개용수로 쓸 수 있지만 평탄한 평야부는 내륙부보다 이런 면에서도 제약이 많다. 따라서 해안부는 가뭄을 더 타는 게 보통일 것으로 이해된다.

가뭄의 타결을 위해 그는 水利를 강조하고 堤防의 축조, 제방 冒耕의 금지, 水車의 利用, 가뭄때의 越畝通水, 물의 均配 등을 강조하는 한편 홍수때의 피해를 줄이고자 直江工事와 넉넉한 流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水利事業에 대한 견해는 다른 應旨農書들에도 대부분 나타나고 있거니와, 특히 보성의 이웃인 靈岩幼學 鄭如元의 應旨農書에 設筒引水之法(오늘날의 潛管)의 기록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水利技術의 개발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水利事業의 필요성은 당시의 水利統計가 뒷받침할 것이나, 불행히도 우리는 18세기의 水利化率을 알 만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1916년의 水利安全畠率을 보면 〈表 1〉과 같거니와, 도별 논 면적은 남북한을 통털어 전남이 가장 넓으면서 水利安全畠은 겨우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이 사실을 18세기로 소급해 볼 때 水利事業에 대한 당시의 관심

表1 1916年의 水利安全率

단위 : ha

道	田面積	畜面積 (1)	灌溉設備가 없는 面積	灌溉設備 面積 (2)	水利安全 率 (2)÷(1)
경기	128,049.8	147,160.7	124,522.9	22,627.8	15.38
충북	43,402.9	51,840.2	21,599.8	30,240.4	58.33
충남	51,288.6	125,140.6	106,291.1	18,849.5	15.06
전북	37,495.6	121,924.1	72,121.1	49,803.0	40.85
전남	104,680.1	136,980.5	100,074.6	36,905.9	26.94
경북	94,818.1	118,215.2	72,313.3	45,902.0	38.83
경남	64,550.8	112,201.5	92,842.5	18,359.0	16.38
황해	266,142.9	85,688.7	67,917.8	17,770.9	20.74
평남	254,036.8	47,712.4	44,727.9	2,984.8	6.25
평북	287,687.6	51,660.2	28,579.0	23,081.2	44.68
강원	160,403.1	49,970.2	26,868.0	23,102.2	46.23
함남	214,427.7	34,250.6	22,454.5	11,796.1	34.44
함북	162,854.0	6,575.5	2,915.8	3,659.7	55.66
計	1,869,838.0	1,089,320.8	784,238.3	305,082.5	28.01

資料:「治水及水利踏査書」朝鮮總督官房土木部。

이 타 지역 못지않게 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7]

다섯째로, 그의 農業立地論을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그 환경에 알맞는 農法을 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재배법은 千里마다 다르고 바람은 百里마다 다르다, 함은 農業生產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결국 서북의 농법을 동남지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농업생산이 環境의 산물임을 깊이 인식한 그의 卓見이라 할 수 있다.

V. 梁翊濟의 農業技術論

저자는 서두에서 奉天時, 盡地利, 修人事등 조선조 개국 이래의 3大 農學原論의 풀이에 이어 6개 항의 경종기술에 관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陳疏하고 있다.

王께 올리는 기술적 내용이니만큼 저자로서는 체험을 통해 확신이 서는 대목만을 골라 올렸을 것이다.

그 첫째가 벼농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벼의 付種法과 適地適作, 그리고 物理的 雜草 예방에 관한 세 가지 내용들이다. 먼저 付種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느 토질이나 品種을 막론하고 直播에 관한 言及이 없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산이 높고 물이 차가운 곳에는 올벼를 심되 그루당 苗數를 줄이고 밀식을 하라는 소위 小科密播을 말하고 있다. 이는 現代的 표현으로 小株密植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는 곧 벼농사의 付種法 중 移秧法만을 말한 것이다. 벼농사의 付種法은 1429年的 “農事直說” 아래 담수직파를 뜻하는 水耕, 건답직파를 뜻하는 乾耕, 뜬자리 育苗와 모내기를 뜻하는 播種(移秧)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조의 벼농사는 그 해 파종기의 물 사정에 따라 水耕과 乾耕 중에서 택일하여 直播栽培하면서 水利事情이 완벽한 곳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移秧栽培를 해 왔다. 그러나 이앙재배는 직파재배보다 本番의 除草勞力을 현저히 줄이고 작업이 용이하여 收穫이 많은 까닭에 차츰 直播栽培가 줄어들면서 오늘날의 이앙재배가 보편화된 것이다. 여기서 직파재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앙재배만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18세기 말 賽城 지방에는 직파재배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있어도 극히 좁은 면적에 국한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水利事情의 개선 없이 이앙재배 면적의 확대는 곧 가뭄에 대한 어려움의 강도를 더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점, 보성 지방의 수리사정, 그리고 저자의 견해는 앞서 農業立地論에서 언급한 바 있어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거니와 여기서 음미할 것

은 이앙재배를 하되 小株密植을 뜻하는 小科密挿에 대한 해석이다. 大株疎植인가 小株密植인가 하는 問題는 그 동안의 시험연구 결과 벼의 생리상태상 같은 면적에 같은 수의 苗를 재식하더라도 大株疎植보다는 小株密植이 地力利用이나 通風採光에 유리하고 收穫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다음으로 適地適作을 뜻하는 벼의 품종과 재배적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山高水冷處와 해변은 早稻, 찬물이 피는 논에 紅稻, 乾濕이 반복되는 곳에 水山稻, 밭 같으면서 밭이 아닌 논에 粘山稻, 진흙땅에 老人稻를 권장토록 서술하고 있다.

山高水冷處는 가을 첫서리가 일찍 내려 冷害를 받기 쉽고 해변은 백중 사리때의 비를 동반한 강한 갓바람(태풍)으로 인한 倒伏의被害을 피하고자 早稻를 권장하였고 기타 품종은 土質에 따라 적응력이 큰 품종들을 권장한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 雜草防除를 위하여 苗를 密植하여 잡초를 억제하는 것보다 淤를 쌓고 겨우내 논에 물을 흘리면 雜草 씨앗을 흘려 보내거나 썩게 하여 잡초예방의 효과뿐 아니라 토양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매우 合理的인 論理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水稻栽培上의 移秧, 小株密植, 適地適品種의 選擇, 雜草 예방 등은 원리面에서 최근의 科學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경종기술이다.

둘째로, 뽕나무의 實生育苗法에 관한 기술인데 첫 해에 實生苗, 2년째에 定植苗, 3년째에 定植苗의 主幹을 잘라 주고 왕성한 側枝를 길러 主幹으로 쓰며, 4년째에 主幹의 끝을 또 다시 剪枝하여 많은 결가지를 뺏게 하면 主幹이 높지 않아 뽕따기도 쉽고 뽕잎도 손바닥 넓이로 크게 된다는 것이다. 곧 저자는 剪枝의

原理를 기술의 모체로 王에게 올리고자 함이었다. 實生育苗를 그대로 기르는 것보다 3년째 主幹의 剪枝가 生育을 더욱 왕성하게 하고 있음은 梧桐나무 재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4년째에 主幹의 끝을 잘라 줄은 生育의 왕성보다는 수직으로 높이 자라지 말고 수평으로 여러 개의 결가지를 내어 낮은 수준에서 뽕잎을 따기 용이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새 기술의 개발이다. 1766年에 柳重臨이 편찬한 增補山林經濟와 1771年에 편찬된 徐命膺의 改事新書에도 이와 같은 剪枝技術이 논술된 바 없기 때문이다.

뽕나무 育苗는 實生法 이외에 휘문이법(取水), 삽목법 등이 四時纂要抄(1482)이래 각종 농서에 소개되고 있으나, 관행상 주류를 이루는 것은 實生法이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 實生苗에 우량 품종을 接木하는 接木苗가 생산되고 있으나 18세기만 하여도 接木苗의 실용은 거의 없었고 간혹 있어도 오늘날과 같은 實生桑苗를 台木으로 쓴 것이 아니라 흰탁나무(白楮, 製紙原料)를 台木으로 한다고 增補山林經濟에 간략히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8] [9]

셋째로, 木花 재배에서는 양지바르고 과습하지 않은 곳을 골라 드물게 과종하되 거름을 많이 주느니 보다 김매기를 자주함이 수량을 많게 하며, 早生種 참깨를 混作함이 좋다고 되어 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이 논이 많은 지방은 木花 재배에 힘쓰지 않아 木花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보성지방이 논이 많은 탓인지 이 木花 재배에 관한 한 注目할 만한 기술적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거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제초를 자주함이 좋다는 뜻은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거름을 많이 주면 웃자라 꽃이 피지 않거나 더디

피고 따라서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넷째로, 보리 재배는 벼농사에서와 같이 品種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適地選擇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드물게 뿐이고 거름을 많이 주라는 것인데, 보리가 多肥를 요하는 禾本科作物임에 비추어 이 풀이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의당 논보리 재배가 많았을 당시의 보성 지방에서 저자가 番裏作 논보리 재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모밀 재배는 재배적지 선택 외에 기술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

여섯째로, 삼(大麻)의 재배도 자세한 기술적 풀이는 없으나, 주목되는 점은 삼의 조기 재배에 관한 것이다. 1429年的 農事直說 아래 삼은 春播가 보통이다. 여기서는 음력 10월에 생장하여 조기에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성 지방이 온화한 남쪽이라 越冬중의 凍害가 염려 없기 때문인 것 같으나, 이는 종래의 農書에 기록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2]

일곱째로, 混作, 間作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木花와 모밀의 풀이에서 이를 논하고 있는데, 이를 적출하면 다음과 같다.

主 作	間 · 混 作
木 花	+ 올 참 깨
모 밀	+ (기장+순무)

間 · 混作은 1개 이상의 작물이 같은 포장에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 農事直說에서는 間 ·混作의 장점을 三災가 들더라도 그중 한 作目은 거둘 수 있거나 경지가 적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나 農事直說보다 2백여년 후인 1655

년에 편찬된 農家集成에서는 木花농사를 專業으로 하는 沃川이나 陽山 사람들은 두 가지 작물이 모두 손해가 나는 이 間 · 混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배기술이 발전된 作物일수록 間 · 混作은 금하는 것이 최근의 과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여기서 間 · 混作을 권하고 있음은 아직도 보성 지방에서 이들 作物의 재배기술이 개발,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믿어진다. [10] [14]

이상에서 梁翊濟 農業技術論을 개관하였다. 벼농사의 小株密植, 환경에 따른 適地適品種의 선정, 뽕나무의 剪枝栽培, 木花의 小肥 및 여러 번 김매기, 보리의 疏播多肥 재배, 大麻의 早期栽培技術 등을 매우 科學的合理性을 띠는 것이며, 개중에 小株密植이 200년전에 저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서술된 것은 매우 높이評價할 만한 내용이다.

VII. 다른 應旨農書와의 比較

正祖는 해마다 계속되는 흉작이 農民經濟나 國家財政上에 큰 피해를 주는 데 자극을 받아 農業問題에 대한 根本的인 檢討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차 英祖 親耕 60週年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면서 國家의 大經大全이 되는 새 農書를 편찬코자 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求農書綸音을 發布하게 되었고, 다음해인 1799年 6月까지 奎章閣에 접수되어 逐條 검토된 것은 應旨陳疏者 27人, 陳農書者 42人 등 도합 69人이었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庶民 2人, 功臣後裔 2人, 幼學 39人, 生員 ·進士 8人, 前職者 10人, 現職者 9人으로 벼슬하지 않은 儒生, 곧 幼

學·生員·進士·公신후예·서민 등을 합하면 모두 50명이나 되어 未仕人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선비들이지만 농촌의 지식인이고 지도층이었다. 求農書綸音이 있자 그들은 그들의 體驗을 통해 얻은 산 知識을 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 知識은 厚薄精疎하여 일률적으로 평하기는 어려우나 하나의 완벽한 農書나 農政書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體驗을 통한 신선한 농업지식이기는 하나 著書로서는 體系的인 서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지식이 단편적이기는 하나 농촌의 절실한 문제들을 다룬 것만은 사실이어서 應旨農書 전체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심각한 農業問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金容燮은 이들을 體系化하여 <表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梁翊濟는 2-2)의 田稅不均의 是正, 3-1)의 勸農司設置, 3-2)의 奢侈의 禁, 4-2)의 水利問題과 4-3)의 農業技術의 改良 등 5개 항에 걸치고 있다. 그

表2 應旨農書의 내용

1. 土地所有問題	2) 農村人統制의 諸問題
1) 限田·均田問題	遊食人統制
2) 貸田問題	奢侈의 禁
2. 土地運營問題	惰農警戒
1) 農地開墾問題	酒·雜技의 禁
陳田起墾	漏丁의 統制
新田開發	貴農抑末
火田開墾	3) 農業協同의 問題
2) 田稅不均의 是正	協同의 必要性
3) 量田問題	鄉約의 實施
3. 農村統制問題	官의 支援
1) 統制機構의 改善問題	4. 農業技術 問題
貸官除去	1) 農書普及
吏額減小	2) 水利問題
勸農司設置	3) 農業技術의 改良
	5. 其他

러나 그의 서술내용은 크게 보아 農業技術 問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저술한 농서라도 모든 문제를 수록하여 풀이할 수 없고, 수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수준에서 至善의 내용만을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分野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른 分野만은 당시의 技術 水準으로 至善의 것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梁翊濟의 農書는 비록 土地所有制度, 耕地基盤擴大등 광범하게 農業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루고 있는 기술적 내용만은 疏漏하나마 新鮮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政府의 檢討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돋보이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日省錄에 수록된 69개의 農書나 陳疏文은 모두 政府의 逐條 검토를 거쳤고, 개중에 靈岩 幼學 鄭始元의 設簡引水之法은 검토과정에서 현지 행정책임자의 확인까지 조복하는 慎重함이 있었지만, 그 밖에 대부분의 검토는 중요한 기술적 내용이 모두 刪除되고 있다. 예컨대 羅州 幼學 羅敏微의 農書는 9綱 32目으로 체계화된 방대한 農書였으나 검토과정에서 모두 삭제되고 2.5쪽, 500여자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靈光進士 李大圭의 農書는 모두 80쪽이 넘는데도 불과 4쪽으로 축소시키고 羅州 幼學 羅學慎의 農書는 2쪽 380字, 義州 進士 南煜의 農書는 2.5쪽, 光州 幼學 朴文燦의 農書는 2쪽 등 가히 선언적 훈시적 내용만 남기고 있다. 더욱이 正祖實錄에 수록된 이들 農書나 陳疏文은 이를 더욱 축소시켜 農政部分의 大意나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鄭始元의 設簡引水之法같이 축소시켜도 기술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現存 應旨農書중 대부분이 다기한 기술적 내용을 일부나마 추측

하기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정부의 검토가 없었던 것이 文化遺產의 보존이나 당시의 農政 및 社會相을 이해하는데 더욱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3][12]

이와 같이 削除된 부분이 기술적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게 된 까닭은 逐條 檢討를 담당한 官員 자신들이 모두 農業에 문외한들이였거나 大意나 要旨만을 남겨야 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저술 原本대로 남아 있는 몇 種 안되는 應旨農書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 쓸모 있는 응지농서는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18世紀末의 農業問題나 技術을 이해하는 데 梁羽濟 農書와 같이 작성은 하였으되 陳疏하지 않은 農書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VII. 全南 寶城地方의 農村問題

梁羽濟의 農書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18세기 말 寶城地方의 農村問題를 들면

첫째, 水利問題로 灌溉用水의 확보와 홍수 피해를 막는 것들이다. 농업용수 확보가 절실했던 것은 벼의 直播栽培가 사라지고 이앙재배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며, 지리적으로는 淹를 구축하기 용이한 山間部보다 해안부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다소라도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堤堰 구축, 水車 사용의 보급, 越畝灌溉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河川의 넉넉한 流幅을 두어야 하고 兩岸의 제방을 侵耕하지 못하도록 하고 直江工事を 통해 홍수시의 流速을 빠르게 하여 侵水被害를 막도록 대책을 세

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창한 수리공사는 流域이 같은 개개 농민의 協同과 組織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으로 이를 담당하는 관리로서 水職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耕種技術의 改善이다. 適期營農, 適地適作 등 주어진 環境에 맞추어 增產을 꾀하면서 風害, 霜害 등을 예방하기 위한 早期栽培 등이 切實한 問題인 바 이를 위해 저자는 郡, 面, 里에 人望이 있고 농사에 밝은 勸農官이나 執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田稅 不均의 是正問題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白地에 課稅를 한다거나 三災가 빈번한 海岸地方도 내륙과 같게 과세한다거나 빈부에 관계없이 무차별 과세나 出役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결음 나아가 황무지를 개간한 자는 5년간 과세를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正祖 22年(1798)에 죽은자나 간난애(黃口)에게도 살아있는 어른과 똑같이 과제(徵布)하는 폐단을 시정토록 각도 관찰사에게 正祖의 特別 紿音(諸道白骨黃口徵布之弊申禁敎)이 내린 것만 보아도 당시의 稅政이 얼마나 紊亂하였나 알 수 있는 일이다. [13]

넷째, 社會問題로 근검절약 또는 오늘날의 소비절약의 問題다. 사치스러운 풍속에 비추어 50세 미만은 비단옷을 못 입게 하고, 벼슬에 있지 않은 자는 모시옷(苧布)을 금하며, 常 사람은 검은 갓과 도포 및 唐鞋(앞뒤에 고추 모양을 그린 가죽신의 한 가지)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치를 금하고 절약을 강조한 내용은 다른 應旨者들도 대부분 같은 견해였다. 이를 오늘날의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첫째, 둘째는 農政의 問題이며, 셋째는 財政의 문제이고, 넷째는 社會政策의 問題

들이다. 농서의 성격으로 보면 셋째, 넷째는 농서라기보다는 왕께 대한 일종의 건의문이나 탄원서 형식의 내용들이다. 비록 이들의 問題 가 보성지방의 한 선비에 의해서 거론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寶城地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당시 全國에 걸친 문제라고 믿어진다.

參 考 文 獻

- [1] 正祖, 勸農政求農書綸音, 1798.
- [2] 鄭招, 農事直說序文, 1429.
- [3] 正祖實錄卷五十, 正祖二十二年 戊午十一月條.
- [4] 金榮鎮, 農林水產古文獻備要, 研究業書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5] 崔恒, 經國大典, 1469.
- [6]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권, 보성군조, 1990.
- [7] 朝鮮總督官房土木部, 治水及水利踏查書, 1916.
- [8] 姜希孟, 四時纂要抄, 1482.
- [9]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1766.
- [10] 申潤, 農家集成, 1655.
- [11]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農村經濟, 社會變動), 1970.
- [12] 日省錄, 戊午十一月~己未五月.
- [13] 正祖, 正祖御製綸音(경희대소장), 1977~1800.
- [14] 金榮鎮, 農書를 통하여 본 朝鮮時代 主要作物의 作付體系. 「農村經濟」第8卷 第2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